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율 규제 〉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9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규제	3
【참고자료 1】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신용카드수수율 관련 주요 규정	11
【참고자료 2】 금융감독규정 상 적격비용	13
【참고자료 3】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6.
3. 회 부 일 : 2025.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

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규제

-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며,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38조의2 신설), 전자금융업자가 영세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2(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전자금융업자(제28조제2항제4호1)의 업무를 행하고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적격비용”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격비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그 밖에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

현행	개정안
<신설>	여야 한다. 제38조의3(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자는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세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영세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임²⁾.

○ 풀어서 설명하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결제 정보를 주고받거나, 실제로 결제 대금을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함.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2) 「전자금융거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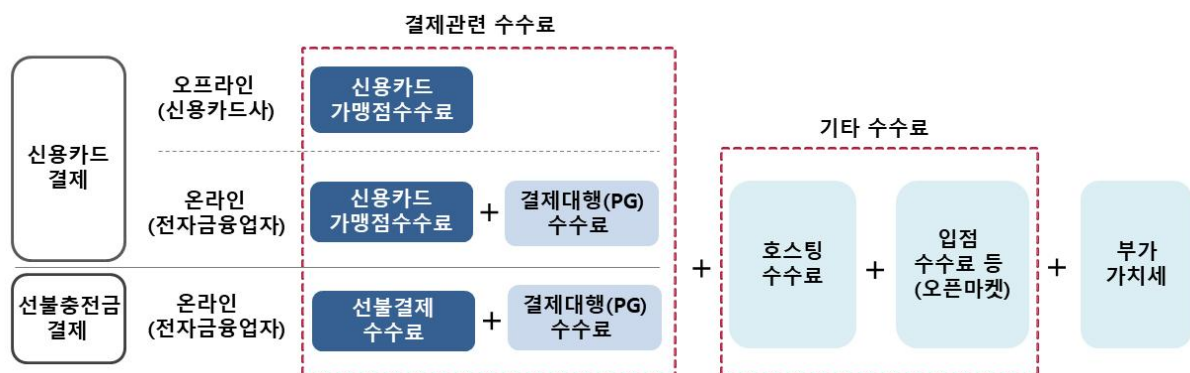
제2조(정의)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가맹점이 신용카드 기반³⁾의 PG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PG사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하고, PG사는 PG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함. 결과적으로, PG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수취하는 결제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 타 PG사 등 원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다른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PG사가 신용카드사 수수료와 PG 수수료 외에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도 포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결제수단별 가맹점 수수료 구조 >



자료: 금융감독원

□ 이와 같이 여러 서비스의 수수료를 PG사가 일괄하여 수취함에 따라 가맹점이 어떤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이

3) 그 외,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도 유사한 구조임.

수수료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지급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외식업체 등의 가맹점이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 자동화 주문기기 기반으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 외에 PG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무인 자동화 주문기기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결제수수료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⁵⁾.

□ 이에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도입되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규제⁶⁾와 유사한 제도를 PG업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 즉, 개정안은 ① (가맹점수수료를 차별 금지) PG사가 가맹점수수료를 정할 때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② (적격비용 도입) 가맹점수수료를 정할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⁷⁾)을 산정하고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도록 하며, ③ (수수료를 산정시 준수사항 마련) PG 수수료를 산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④ (우대수수료를 도입) PG사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 무인 자동화 주문기기 임대 및 관리 등 서비스 이용료는 결제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됨.

5) 서울경제, “테이블오더 수수료 사기당한 기분”... QR오더 계약할 때 수수료 꼭 확인하세요. 2025. 7. 10.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ANEKFQR>) 등 다수 언론 보도

6) 카드결제수수료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우대수수료를 적용, 적격비용의 산정, 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을 규율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참조

7) [참고자료 2] 적격비용 참조

금액 이하인 영세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부당한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PG서비스 기반의 무인 자동화 주문기기 이용에 따른 결제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PG 수수료율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서비스의 품질 저하, 관련 사업 투자 위축 등 일반적으로 가격 규제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수수료율 규제보다 가맹점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수수료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에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 규제를 PG업에 도입하려는 것인데, PG 수수료율을 법률로 직접 규제할 정도로 PG사가 신용카드사만큼의 시장지배력과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은 높은 진입장벽(허가제, 자본금 200억)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참여하는 시장으로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가맹점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으나, PG업은 진입장벽이 낮아(등록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 규모에 따라 3억원 또는 10억원⁸⁾) 소규모 업체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경쟁적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⁹⁾.

○ 셋째, 개정안은 무인 자동화 주문기기 이용시 과도한 PG수수료로 인한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는데, ‘테이블오더 활용 실태조사 결과’¹⁰⁾에 따르면 테이블오더 활용 사업장의 60.0%가 가맹점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VAN사¹¹⁾를 이용하고 있었고, PG사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11.4%에 불과¹²⁾하여 PG 수수료를 규제하더라도 무인 자동화 주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결제수수료를 부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넷째, 동 개정안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 적격비용 산정, 우대수수료를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조문별로

8)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3억원, 30억원 초과인 경우 10억원

다만, 지난 2025. 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사위 계류중)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PG업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9) 2025년 5월 기준, 전업카드사 8개(현대, 삼성, 롯데, 비씨,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PG사 171개

10) 중소벤처기업부, 외식업 사업장의 테이블오더 활용 실태조사 결과(2024. 11. ~ 12. 실시)

11)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 : 카드사등의 금융망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가맹점에 설치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나 POS를 통해 카드 결제업무를 전산으로 중계, 처리하는 서비스로, VAN사는 가맹점이 아닌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함.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에 포함되나, 등록 의무가 면제(§28③2호)되고 있으며, 지난 2025. 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사위 계류중)에서는 VAN서비스를 PG업에서 제외하였음.

12)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28.6%로 나타남.

상이하여 수범 대상을 일치시키는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금지 및 적격비용 관련 사항은 “전자금융업자 중 PG사”에게만 적용되는데(안 제38조의2), 우대 수수료율은 “전자금융업자” 모두에게 적용됨(안 제38조의3). 반면에 PG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에는 신설되는 수수료율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음¹³⁾.

□ 개정안에 대하여¹⁴⁾ 금융위원회는 PG사의 서비스 내용 및 비용 구조, 신용카드업과 전자금융업의 시장 여건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PG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1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4) 관련 부처 외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참고자료 3] 참조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G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수수료율 차별금지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율 범위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45조15)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가격,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49조) 및 과징금(공정거래법 제50조) 등 제재수단을 함께 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하 생략)

【참고자료 1】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신용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규정

법령명	조문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u>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u>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u> 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u>우대수수료율을 적용</u>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u>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2. 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명	조문 규정
	4.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매출액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그 거래에 한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보아 제2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라 한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교통운임 정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자(이하 ‘결제대행택시사업자’라 한다)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말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4 이하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0 이하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5 이하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45 이하

【참고자료 2】 금융감독규정 상 적격비용

<별표 4> <개정 2025.2.5.>

적격 비용(제25조의4제2항 관련)

1. 자금조달비용

신용판매(리볼빙 포함)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공여기간(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판매대금 지급일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의 제1회차 신용판매 이용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 다만,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신용판매 대금이 가맹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출전표매입일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의 제1회차 신용판매 이용대금결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하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 다만, 신용카드 회원에게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적격 비용 예시>

- 신용판매에 대한 신용공여기간 동안의 자금조달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회원에게 할부신용판매수수료 · 리볼빙신용판매수수료 등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의 자금조달비용
- 신용판매와 무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 및 할부 · 리스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비용
- 가맹점이 기 부담한 무이자 할부 관련 자금조달비용

2. 위험관리비용

대손비용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판매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 신용카드회원에게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대손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적격 비용 예시>

-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또는 갱신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판매 관련 대손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금액에 대한 대손비용
- 신용카드회원에게 할부신용판매수수료 · 리볼빙신용판매수수료 등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대손비용
-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또는 갱신 당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정한 개인신용평점이 0인 신용카드회원의 신용판매 관련 대손비용
- 신용판매와 무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 및 할부 · 리스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대손비용
- 가맹점이 기 부담한 무이자 할부 등 관련 대손비용

-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3.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결제거래 정산 등의 업무 처리를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등 거래승인 수수료
- 신용카드등 매출데이터 중계, 매출전표 수거·보관 등 매입정산 관련 수수료

4. 마케팅비용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또는 경품 제공 등 신용카드등의 매출 확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이 경우 마케팅비용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하며, 특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시켜야 함

<적격 비용 예시>

- 상품약관에 따라 신용카드등의 이용시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비용
- 상품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 이외에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신용카드등의 매출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회원이 부담하는 제휴연회비
- 상품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
- 신용판매와 무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 및 할부·리스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마케팅비용

5. 일반관리비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전산운영비, 건물 임차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일반적인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계적으로 산정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

<적격 비용 예시>

- 급여·퇴직급여(명예퇴직급여를 포함한다)·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전산운영비, 건물 임차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일반적인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 부문별로 배분하고, 신용판매 사업 부문에 배분된 비용을 신용카드가맹점 결제 부문에 배분한 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회원의 이용대금 청구비용, 신규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용카드등의 발급 비용, 신용카드등의 배송비용 등 신용카드회원의 관리와 관련한 비용

- 신용판매와 무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 및 할부·리스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
- 접대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기타 비정상적 요인에 의한 비용

6. 조정비용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유한 거래 특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용을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조정비용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예시>

- 야간 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참고자료 3】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불명확한 규정으로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과잉 규제 우려

- 제안 취지를 통해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등 무인 자동화 주문 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를 수범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결제대행업체 일체가 수범대상이 되기에 통신판매(중개)업 영위를 위해 부수적으로 PG업을 등록한 업체까지 본 법률안의 규제를 적용받는 과잉 규제가 될 것임.

○ 선행분석을 거치지 않은 규제의 실효성 우려

- 본 법률안은 규제 필요성 실증적 근거인 수범 대상의 시장 상황 및 비용 구조에 대한 선행분석을 거치지 않고 만들었기에 시행 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됨.
- 테이블오더 시장에 대한 분석을 거치지 않아 업계 1위 과점 업체가 결제 연동을 VAN사에 하고 있어 PG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 PG 수수료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무인 주문 자동화 기기 전체 이용료의 일부인데 본 법률안은 PG 수수료가 무인 자동화 주문 기기 전체 이용료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 PG사들은 무인 자동화 주문 기기 업체와 제휴 해 결제, 정산 등을 대행하는 PG 서비스만 대행하고 그 수수료만 정산하고 있음.
- PG 수수료의 상한을 규제하더라도 무인자동화 주문 기기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여전히 무인 주문 자동화 기기 제공 서비스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 여부가 우려됨.

○ 카드 시장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인 PG 시장에 동일한 규제 적용 시 부작용 우려

- 현재 적격비용이 도입된 카드 시장은 허가받은 8개사의 과점시장으로 연간 이용실적이 약 999조 원에 달하며 PG 시장에 비해 이용실적이 61배나 높음.
- 그러나 시장 초기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194개의 등록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PG 시장에 카드 시장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활발히 참여 하고 있는 PG 시장의 동력이 저하 될 우려가 있음.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새로운 기능 도입이나 기술 혁신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강하게 예상됨. 또한 다수 업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감소하여 이용자 후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의 입법 목적 달성 곤란

- 본 개정안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PG사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무인 자동화 주문 기기를 제공하는 업체(티오더,페이히어,메뉴잇,하이오더 등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PG사의 수수료가 높은 것이 아니라 무인 자동화 주문 기기 업체의 수수료가 높은 것임.
- 이에 전자금융업자인 PG사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더라도 무인 자동화 주문 기기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데에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소상공인 대상의 PG 가맹점 계약 축소 우려

- 수수료 상한으로 인해 수익성이 제한되는 경우 PG사들은 영/중/소 사업자 대상의 서비스를 축소할 수 밖에 없으며, PG를 필요로 하는 영/중/소 사업자들은 되려 PG를 이용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음
- PG사는 가맹점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는데, 영/중/소 가맹점의 PG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PG사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여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기피하여, 오히려 소상공인에게불리한 시장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인위적인 가격 개입·통제로 인해 시장 혼선 발생 우려

- 전자금융업 신규 진입 사업자 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는 적격 비용 산정 정책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며, 개정안 취지와 달리 대형 전자금융업자만 시장에 남아 독과점적 시장으로 개편될 우려가 있음.

○ 일률적인 수수료 규제로 인한 영업의 자유 침해

- 가맹점과의 거래구조 및 수수료율 책정은 사업자들 간 경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임. 금융당국도 이를 존중하여 지난 2023년부터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율 공시제도를 도입해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특히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자들은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임. 전체 사업자에게 일률적인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규제는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뿐더러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적격비용 구조의 문제점

- 현재 전업 PG와 PG 라이선스를 요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수수료 공시 등을 통해서 수수료 인하 압력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적격비용을 규율할 경우, PG 사는 계약 대상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대손 리스크를 고려하게 되어 영·중소 매장의 경우 VAN, PG 및 카드사 가맹 계약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카드사의 영·중소 적격비용 구조 하에서는 매장의 매출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적격 수수료에 따른 재정산이 이뤄지게 되고, 매장의 정산 시기가 늦어져서 ❶영·중소 매장의 유동성 문제와 함께 ❷PG사의 평균 미정산 잔액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함.
- 최종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은 강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본연의 경쟁력인 빠른 정산의 이익이 사라지게 되며, 소상공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인지 제고가 필요함.

○ 테이블오더·키오스크 이용에 따른 수수료 인상 문제

- 상술한 바에 따라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보급하는 것은 ❶구매 ❷리스 ❸렌탈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 키오스크·테이블오더의 보급 형태에 따라 ❶판매가액의 대출 이자와 ❷리스 및 ❸렌탈로서 적용되는 추가 수수료율을 엄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 대조 분석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수수료율 부담 증가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04